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시험 형법 총평

안녕하세요. 이재영입니다.

힘겨운 시험을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의 형법문제는 사실관계가 조금 길었지만 예년과 동일하게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쟁점이 명백한 내용을 출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문은 2003년 9회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는 쟁점이고 제3문은 2012년 법원승진 시험에 출제된 바 있는 쟁점입니다. 오래된 기출문제나 법원에서 시행하는 인접 기출문제는 유념해서 준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이어 형법 총론의 작은 논점이 제3문에서 논술형으로 출제되었는데 형법 총론의 내용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쟁점은 절대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제1문은 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폭행을 가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②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공무집행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 상해행위를 가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이 핵심 논점입니다.

제2문의 경우 다소 복잡한 논의로 연결될 수도 있는 사례이지만 <은행에 대한 사기죄>로 쟁점을 명확하게 한정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역시 판례 사안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주가 예금채권의 행사로서 예금을 출금한 경우로서 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서술하면 될 것입니다.

제1문과 제2문의 경우 설문의 사실관계를 줄인다면 3~4줄의 분량으로도 출제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에 속하고, 20점 배점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시간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3문은 예비죄에 대하여 ① 방조범을 인정하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 ② 기도된 교사규정의 반대 해석, ③ 공범종속성 등을 근거로 예비죄의 방조범을 부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시험이 끝나고 나면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되며, 특히 이미 합격권에 도달한 사람의 경우 항상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아쉬움의 크기는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쉬움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합격자 발표 날에 웃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 형사소송법 총평】

1. 먼 저

그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며 수험준비에 고생하셨던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의 형사소송법 문제는 중요한 쟁점과 관련된 최근의 판례가 다수 출제되었던 최근 몇 년간의 출제경향과 달리, [1]문과 같은 좀 오래된(?) 판례, [3]문과 같은 좀 구석진(?) 판례, [2]문의 가, 다와 같이 명시적 판례가 없는 부분에서 출제되어, 현장에서 문제를 마주한 수험가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예년과 달리 수험생들의 준비방법에 따라 점수에 있어서 그 편차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 구체적인 검토

【1】은 대판 1974.1.15. 73도2967 등을 기초로 한 문제로, 법원이 법정 외 증인신문(제165조)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장소를 미리 통지(제163조)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 후 동 증인 등 신문결과를 동 증인 등 신문 조서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하였던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입니다(졸저 형사소송법(2016년) 458p 3行 이하 (2) 2) 대판 1974.1.15. 73도2967, 동차반 기본서(2017년) 393p, Blackbox 23p 3. (2) 참조).

【2】는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전문법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문제로, 전문증거의 핵심요소인 원진술의 특징인 진술증거성, 요증사실과의 관계 등이 쟁점입니다. 특히 [가]는 원진술자의 진술이 언어적 행동으로 사용된 경우에 전문증거로 보아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나], [라]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대판 2008.11.13. 2006도2556[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사건], 대판 2008.11.13. 2008도8007[외국연수 사례비 사건]을 기초로 한 문제이며, [다]는 원진술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원진술자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쟁점입니다(졸저 형사소송법(2016년) 562-565p 특히 564p [Tip], 동차반 기본서(2017년) 468-471p 특히 470p [Tip], Blackbox 112p 01.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참조).

【3】은 대판 2013.7.11. 2012도16334 등을 기초로 한 문제로, 제1심에서 청구국선(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던 경우에, 제1심판결 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다시 국선변호인 청구가 있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선고 기일에 국선번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면서 甲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은, 국선번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판결이라는 것이 쟁점입니다(졸저 형사소송법(2016년) 86p (나) 청구 국선 ② 대판 2013.7.11. 2012도16334, 동차반 기본서(2017년) 72p, Blackbox 15p 등 참조).

3. 맺으며

좀 오래된(?), 좀 구석진(?) 판례에서 나온 문제들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풀이 죽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의타였다면 대부분의 수험생에게도 마찬가지로 느껴질 것입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잠시 수험생활을 잊고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빕니다.

2017년 법무사 2차 시험 민사서류 총평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 답안례와 의견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한 답안례는 물론 100% 완벽답안도 아니고 참고례에 불과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작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늘 그랬지만 이 번시험에는 특히 더 민사소송법과 함께 보는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작성하기에는 수험생 모두가 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이 번 시험은 더욱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답안례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대한 압축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3장이나 됩니다. 문제를 읽고 검토하고 소가를 산정하는 시간을 빼고, 단순하게 위 답안례를 그대로 베껴 쓰기만 한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점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통된 상황이었을 것이고, 논문식 시험의 특성상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점수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며, 시험이 끝나면 늘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발표시 까지는 늘 그래왔듯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1차 시험보다도 2차 시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채점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발표시 까지는 결과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역시 모든 수험생이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을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면에서 쉽지 않은 새로운 세계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점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합격했다고 해서 고생이 끝난 것이고 누가 앞길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 후 전문가로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더욱 많은 실력이 필요하고 많은 분야의 실무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점점 무한경쟁의 상황속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발표때 까지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법) 이천교